

2021 제1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프랑스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영국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 독일 보훈문화진흥 관련 법제 현황

외국법제동향

- 독일 민법상 중개수수료 규정 관련 최신 동향
- 중국 수출규제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캐나다 아동학대 방지 법제 현황 및 주요 내용
-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체계 및 주요 내용

2021 제1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체계 및 주요 내용

김성천 | 입법정책연구원 경쟁·소비자법연구소장, 법학박사

I. 들어가며

프랑스는 2020년 6월 11일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정보 투명성에 관한 법률」(Loi n° 2020-699 du 10 juin 2020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sur l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이하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이라 한다)¹을 공포하였다.

프랑스는 이미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정보 규제법제로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과 「소비법전」(Code de la consommation)²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법전들은 표시내용의 규제 등 개별규제와 함께 하위법령인 데크레(décret)³에서 개별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소비법전」은 상품 전반에 관한 정보를 규제하는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법전」 L. 제412-1조제13항은 상품 자체, 포장, 송장, 상업서류 또는 판매촉진서류에 관한 제시 또는 기재사항의 방식에 대해 데크레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방법, 종류, 품질의 중요사항, 구성, 식품의 영양 성분, 유효성분의 함유량, 품종, 원산국·원산지 정보, 식별정보, 총량, 용도, 사용방법 등이 중요한 항목이다. 「소비법전」 L. 제412-4조제1항은 농산물, 식품 및 해산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산국의 표시를 실시해야 하는 특별규정이다.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은 농산물, 식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제하는 EU규칙(regulation)인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EU) 1169/2011」⁴도 직접 적용된다. 이 규칙은 EU⁵의 새로운 식품표시

1 Loi n° 2020-699 du 10 juin 2020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sur l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https://www.legifrance.gouv.fr/download/pdf?id=sAjwX39twFQN2kUpNDKheFsDFihSq-tW46KWa2ISZzs>> (최종방문일: 2021년 3월 8일)

2 프랑스 「소비법전」에 대해서는 남궁술, 프랑스 소비자법 체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5권 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참조, 프랑스 「소비법전」의 원문과 번역은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38150&AST_SEQ=1286&ETC=0 참조 (최종 방문일: 2021년 3월 8일)

3 「데크레」는 대통령 또는 수상이 발동하는 명령이다. 데크레에 대해서는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135-136쪽 참조

4 Regulation (EU) No 1169/201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1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amending Regulations (EC) No 1924/2006 and (EC) No 1925/2006

규제로 상세한 식품정보제공을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는 식품정보 관련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차원의 대응으로서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을 제정했다.

II. 제정 연혁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의 제정은 2018년 「농업 및 식품 부분의 상업관계의 균형 및 건강, 지속가능 및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2018년 10월 30일 법률 제2018-938호」(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를 둘러싼 논란에서부터 시작되었다.⁶

프랑스는 2018년에 농업과 식품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한 「농업 및 식품 부분의 상업관계의 균형 및 건강, 지속가능 및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2018년 10월 30일 법률 제 2018-938호」(Loi n° 2018-938 du 30 octobre 2018 pour l'équilibre des relations commerciales dans le secteur agricole et alimentaire et une alimentation saine, durable et accessible à tous)을 제정하였었다.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기본정책은 농가 등의 생산자 수입 확보, 위생·환경의 관점에서의 생산활동에 대한 개선, 건강·안전·지속가능한 식품의 제공 촉진, 동물복지의 강화, 식품분야에서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축 등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프랑스 국회에서 가결된 후 60명 이상의 상원의원이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해당 법률의 합헌성 심사를 요구하여 헌법재판에 회부하였다.⁷ 합헌성 심사를 요구하는 근거로는 법 아래 평등원칙 위반,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등의 논점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헌법(1958년 제정) 제45조제1항에 위반하는 이른바 “편승입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당초안)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없는 조항이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mmission Directive 87/250/EEC, Council Directive 90/496/EEC, Commission Directive 1999/10/EC, Directive 2000/1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mission Directives 2002/67/EC and 2008/5/EC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08/2004 (Text with EEA relevanc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5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프랑스에서는 Union européenne(EE)이라고 표기한다.

6 프랑스 三輪和宏, フランスの農産物及び食品の情報の透明性に関する法律, 外国の立法 No. 286(2020.12),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3-5쪽 참조

7 프랑스 헌법(1958년 제정) 제61조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하원의원 60명 또는 상원의원 60명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 헌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추가되었으며, 그 추가 조항은 법률안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사절차상의 하자로 위헌이라고 제기된 것이다. 이에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8년 10월 25일의 판결⁸에서 헌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3개 조문을 위헌으로 보아 삭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삭제된 조항 중에는 라벨 등 표시의 개선·충실화, 추적성의 확보, 식품다양성 확보, 생산활동에 관한 공적 신고에 대한 조정(포도 및 와인의 신고의무 계속) 등에 관한 것들이 있었다. 이들 조항은 기본정책 중 건강·안전·지속가능한 식품의 제공 촉진에 해당하여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추가된 조항들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위헌판단 이후 이 조항들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의원제출 법률안으로 준비되었다. 이와 같이 정리된 의안제출 법률안은 2019년 3월 20일에 프랑스 의회 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프랑스 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식품에 대한 공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신설, 식당 등에서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다진고기의 원산국 등의 표시,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식품의 동물유래의 명칭 사용금지, 맥주 라벨에서의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명기 등 4개 조항이 추가되었다.

추가 수정된 법률안은 2020년 3월 4일자로 상원에서 가결되었으며, 5월 27일자로 하원에서 가결되어 통과되었다. 6월 10일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6월 11일에 공포되었다.

III. 주요 내용

1. 개요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은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소비법전」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것과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의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은 식품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원산국 등 표시제도의 정비, 종자 등의 양도범위 확대 등 그 밖의 규제제도의 정비를 내용으로 관련 법전의 개·폐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소비법전」의 상품정보에 관한 일반규제 부분을 개정하고, 원산국 등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라벨표시 등에 대해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과 「소비법전」을 개정하였다. 종자 등의 판매규제의 완화, 특정종목의 스파클링 와인의 생산 규제 철폐, 포도 등의 수확 등의 신고의무 등을 개정했다.

8 Décision n° 2018-771 DC du 25 octobre 2018.

2. 식품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제1조)

(1) 사전 포장된 식품에 관한 데이터의 온라인 공개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1조는 사전 포장된 식품의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규정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상품명, 원재료, 알레르기물질의 유무, 중량, 소비기한, 원산국 등이다. 이런 정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소비법전」 L. 제412-1조⁹⁾에 사전 포장된 식품에 관한 데이터의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L. 제412-1조는 상품의 판매 및 수출입 등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데크레에서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규정한다.

(2) 국가에 의한 식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신설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식품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가 설치하고 제공한다. 데이터의 등록자는 식품의 최초 유통 책임자가 되고,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데크레로 정한다.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 이용은 무상이며, 「시민 및 행정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제3편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적 정보의 2차 이용' 규정이 적용된다. 그 밖에 데크레는 이용자의 접근 편리성을 고려한 데이터의 포맷을 정한다. 이 때 「유럽의회 및 위원회 규칙(EU) 1169/2011」의 미리 포장된 식품을 포함한 식품 전반의 라벨표시에 대한 규정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였다.

3. 원산국 등의 표시제도 정비

(1) 카카오로 만든 식품의 원산국 표시(제2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2조제1항은 카카오로 만든 식품(코코아, 초콜릿 등)이 미가공인지 가공인지에 관계없이 원산국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원산국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품 구입시 제품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꿀·로열젤리의 원산국 표시(제2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2조제1항은 꿀의 원산국 표시의무화를 규정한다. 이때 꿀이 혼합되어 수확국이 복수인 경우 라벨에 수확국을 꿀 중량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확국이 EU 회원국인지 아닌지는 직접 표시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판단하게 된다. 또한 로열젤리도 꿀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9 제412-1조는 상품의 판매 및 수출입 등에 관해, 법령으로 규제할 때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식품판매의 소비자 정보전달 (제3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3조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의 원격수단을 이용하여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 및 계약조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정보에 대해 읽을 수 있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식품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3조는 「소비법전」 L. 제221-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L. 제221-5조는 판매사업자가 판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정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상품의 중요한 특징 ② 가격 ③ 납기 ④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 ⑤ 법적 담보 책임 ⑥ 소비자재자에 의한 불만처리 ⑦ 계약의 해제 ⑧ 분쟁 해결 방법 등의 정보이다. 이어서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3조는 2011년 10월 25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 (EU) 1169/2011」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상품정보를 읽을 수 있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제1항은 식품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식품의 명칭 ② 성분 목록 ③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는 성분 ④ 특정 성분의 양과 그 범주 ⑤ 총량 ⑥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⑦ 보관·사용에 대한 특별 조건 ⑧ 식품판매 사업자의 명칭·주소 ⑨ 원산국 또는 원산지 ⑩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 ⑪ 알코올 도수 ⑫ 영양 표시 등이다.

(4) 식당 등에서의 쇠고기 등의 원산국 등의 표시의무 확대 (제4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4조는 자국산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편 또는 여러 편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고기¹⁰, 다진쇠고기를 포함한 요리를 대상으로 그 장소에서 먹는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¹¹과 그 장소에서 먹는 식사 및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¹²에게 원산국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의무화했다.

(5)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음식에서의 동물유래 명칭 사용금지 (제5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5조는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을 의미하는 명칭¹³을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크, 등심, 소시지, 베이컨, 우유, 치즈, 요구르트, 크림, 버터 등의 명칭을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이용한 식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금지되는 경우는 상품 설명, 상품화 실시, 판매촉진 등 3가지이다. 또한 금지되는 사례로 식물성 단백질의 사용 비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부터인가에 대해서는 데크레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다.

10 닭고기, 칠면조, 오리 등을 말한다.

11 레스토랑, 대학식당, 자선단체식당, 교도소식당 등을 말한다.

12 고객의 좌석이 별도로 설치된 점포, 다른 위치에 고객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는 점포 등을 말한다.

13 스테이크, 소시지, 베이컨, 우유, 치즈, 요구르트, 크림, 버터 등의 명칭을 말한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5조는 순수 식물 유래 식품이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전통 유제품의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2017년 6월 14일 판결¹⁴을 따른 것이다.

(6) 농장 밖에서 숙성공정을 행한 치즈에 대한 ‘농가치즈’ 표시 인정 (제6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6조는 농장 밖에서 숙성공정을 행한 치즈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농가치즈¹⁵의 표시를 인정했다. 제6조가 규정한 요건은 ①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농장 밖에서 숙성공정이 이루어진 것 ② 농장 밖에서 숙성공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의 두 가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테크레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6조는 이전에 농장 밖에서 숙성공정을 행한 치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가치즈’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테크레 규정을 프랑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판결한 것에 대해 테크레 규정 보다는 상위법령인 법률에서 규정하여 해결한 것이다.

(7) 와인 원산국을 오인시키는 브랜드·명칭·마크·표시의 금지 (제7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7조는 「소비법전」 L. 제413-8조제2항에 “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금지사항을 와인 라벨 표시에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소비법전」 L. 제413-8조제1항은 천연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잘못 인식시키는 산물·제품의 브랜드, 명칭, 마크 또는 표시를 첨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확하게 눈에 띄는 문자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붙인 산물·제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외국산 와인에서 프랑스의 지명을 크게 표시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어려웠다.

(8) 레스토랑, 술집 등에서의 와인 원산지 표시의무화 (제8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8조에서는 주류 제공업체의 경영자가 와인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와인의 제공형태는 그 장소에서 먹는 음식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와인이 들어간 용기는 병, 주전자, 잔 등 3가지이다. 이때 원산지 표시를 하는 매체는 읽을 수 있는 매체에 한정된다.

14 CJUE Verband Sozialer Wettbewerb eV contre TofuTown.com GmbH, 14 juin 2017, C-422/16.

15 소나 염소 등을 기르는 농장에서 직접 착유한 우유로 만든 치즈를 말한다.

(9) 맥주 라벨에서의 제조업자의 명칭과 주소 명기 (제9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9조는 맥주 라벨에서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할 의무를 규정한다. 이전에는 「소비법전」과 관련 법령에 맥주에 대해 음료의 기준을 나타내는 기준뿐이고, 맥주의 라벨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은 없었다. 맥주 라벨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EU) 169/2011」 등에 의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맥주는 11개 항목을 표시하는 것이 필수이다. 즉, ① 식품으로의 명칭(맥주 등) ② 성분 목록 ③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는 성분 ④ 총량 ⑤ 소비기한 ⑥ 보관·사용을 위한 특수 조건 ⑦ 식품 판매 사업자의 명칭·주소 ⑧ 원산국 또는 원산지(다른 표시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⑨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 ⑩ 알코올 도수 ⑪ 영양 표시 등이다.

4. 종자 등의 양도범위 확대

(1) 식물품종의 공식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종자 등의 비상업적 목적에 의한 유상양도 인정 (제10조)

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 L. 제661-89조제2항은 식물품종의 공식목록에 수록되지 않은 품종(‘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품종’)도 그 종자 및 영양번식재료를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 정원사 및 공적 기관(‘비직업적 최종이용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인정했다. 이에 추가하여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10조는 무상에 의한 양도 이외에 새로이 유상에 의한 양도도 허용되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2) 끌레레뜨 드 디(Clairette de Die)의 특별 보호 법률의 폐지 (제11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11조는 ‘끌레레뜨 드 디(Clairette de Die)’를 특별히 보호하는 「1957년 12월 20일 법률 제57-1286호」를 폐지했다. 끌레레뜨 드 디는 프랑스 남동부의 론에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흰색의 스파클링 와인이다. 끌레레뜨 드 디는 원산지 통제 명칭(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¹⁶, 원산지 통제 명칭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 지역에서 끌레레뜨 드 디 이외의 스파클링 와인의 생산을 금지하는 「1957년 12월 20일 법률 제57-1286호」의 보호도 받았다. 이 법 제1조에서 끌레레뜨 드 디라는 통제 원산지 명칭의 사용이 허가된 지역에서는 끌레레뜨 드 디 이외의 스파클링 와인의 생산을 금지했었다.

16 AOC는 와인 원산지의 명칭을 통제하는 제도로 포도재배자, 네고시앙(négociant), 노동조합 등 와인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 1935년 조셉 카뤼스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제도에 대해서는 심을식,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AOC) 고찰, 용봉인문논총, 통권 53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참조.

(3) 포도 및 와인의 수확·생산·재고 관련 신고의무 계속 (제12조)

「농·식품정보투명성법」 제12조는 EU의 임의적 제출제도와는 별도로 프랑스에서 수확·생산·재고를 할 때의 각각 신고의무를 계속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조세 일반 법전」(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407조제1항에서 수확·생산·재고에 따른 신고를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② 같은 법전과 「농업 및 해양어업 법전」의 조문에서 「수확·생산·재고의 신고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칙(EU) 436/2009」을 참조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참조한 EU의 규칙 부분을 프랑스의 개정법률에 모순 없이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IV. 나가며

근래 여러 나라에서 고유의 농산물·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광고 등을 할 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식품소비자법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의 농산물·식품에 관한 정보를 둘러싼 고유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은 식품에 대한 공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신설(제1조) 등 국민 전체가 관련된 제도의 창설에서부터 스파클링 와인 ‘끌레레뜨 드 디’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의 폐지(제11조) 등 섬세한 제도적 변화까지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아울러 프랑스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상품정보를 소비자 등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제를 다양한 개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이런 입법대응은 다른 국가도 꾸준히 해야 할 입법태도로 보이며, 프랑스의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은 자국 농산물·식품을 둘러싼 문제에 대응한 입법의 좋은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3.13.) 및 시행(2019.3.14.)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식품의 정보를 둘러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를 개선할 때에는 프랑스의 「농·식품정보투명성법」이 참고할 만한 입법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록〉

「농산물 및 식품 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2020년 6월 10일 법률 제2020-699호」

하원과 상원은 채택하고
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법률을 공포한다.

제1조

「소비법전」 L. 제41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 3의 이어 3의2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의2 사전 포장된 식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재에 관하여 시민 및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법전 III에서 규정한 요건으로 최초 유통 책임자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중에게 제공하는 방법”

2. II의 끝에 다음과 같은 항을 추가한다.

“1 3의 2에 규정된 정보에 대해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2차 이용을 가능하도록 데크레는 특히 이용을 제공하는 장소 및 데이터의 포맷을 정한다.”

제2조

I. 「소비법전」 L. 제412-4조제1항에 이어 아래의 3개항을 추가한다.

“카카오로 만든 제품은 미가공인지 가공인지에 관계없이 사람이 먹는 것은 원산국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1개국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제3국이 원산인 꿀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꿀은 라벨에 수확한 모든 국가를 중량 내림차순으로 표시한다.”

“제3항은 로열젤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I. 앞의 I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부터 이전에 합법적으로 생산되거나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본조에 의한 개정 후의 「소비법전」 L. 제4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무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제3조

「소비법전」 IV편 I장 II절 2관의 끝에 L. 제412-8조를 추가한다.

“L. 제412-8조 식품판매에 관한 원격지자간의 계약체결 전에 사업자는 L. 제22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CE)1924/2006와 (CE) 1925/2006을 개정하고 위원회 지침 87/250/CEE, 이사회지침 90/496/CEE, 위원회지침 1999/10/CE, 유럽의회 및 이사회지침 2000/13/CE, 위원회지침 2002/6/CE 및 2008/5/CE와 위원회규칙(CE) 608/2004을 폐지하는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에 관한 2011년 10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UE) 1169/2011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정보는 해당 제품이 제시되는 원격지자간의 판매매체에 나타내는 것으로, 또는 어떤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 무료로 전달한다. 다른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는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원격지자간의 판매매체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이 조의 적용방법은 국참사원(Conseil d'Etat)의 회의를 거쳐 데크레로 정한다.”

제4조

「소비법전」 IV편 I장 II절 2관의 끝에 L. 제412-9조를 추가한다.

“L. 제412-9조 I. 그 장소에서 먹는 식사를 시설 또는 그 장소에서 먹는 식사 및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는 1편 또는 여러 편의 쇠고기, 1편 또는 여러 편의 돼지고기, 양고기 및 가금류 고기 또는 1편 또는 여러 편의 다진쇠고기를 포함한 음식에 대한 원산국 또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다만, 쇠고기는 쇠고기의 식별 및 등록 제도 및 쇠고기 및 쇠고기가 주성분 제품의 라벨 표시 제도를 마련하고, 위원회 규칙 (CE) 820/97을 폐지하는 2000년 7월 1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CE)1760/2000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돼지고기, 양고기 및 가금류 고기는 돼지종, 양종, 염소종 및 가금류에 속하는 동물의 생명, 냉장 및 냉동고기의 표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UE) 1169/2011의 적용방법에 관한 2013년 12월 13일의 위원회규칙(UE) 1337/2013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쇠고기는 쇠고기 및 쇠고기가 주성분 제품의 라벨 표시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CE) 1760/2000의 적용 방법에 관한 2000년 8월 25일자 위원회 규칙(CE) 1825/2000(18)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II. I에서 규정된 원산의 표시 적용방법은 데크레로 정한다.”

“위의 I에 규정된 표시방법 및 적용제재는 데크레로 정한다.”

제5조

「소비법전」 IV편 I장 II절 2관의 끝에 L. 제412-10조를 추가한다.

“L. 제412-10조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을 의미하는데 사용하는 명칭을,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식품의 안내, 판매 또는 판매 촉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명칭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물성 단백질 사용 비율은 데크레로 정한다. 이 데크레는 이 조의 적용방법 및 위반시 부과제재에 대해서도 정한다.”

제6조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 L. 제641-19조의 끝에 아래 항을 추가한다.

“농가치조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농장 밖에서 숙성과정이 행해진 경우 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 이외에, 데크레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제7조

「소비법전」 L. 제413-8조 2항 중 “그러나” 다음에 “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를 추가한다.

제8조

I. 「소비법전」 IV편 I장 II절 2관의 끝에 L. 제412-11조를 추가한다.

“L. 제412-11조 그 장소에서 음식 또는 테이크아웃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상점의 영업 허가 또는 레스토랑 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 경영자는 병, 주전자 또는 잔의 형태로 판매되는 와인 원산국 및 필요에 따라 보호 원산지 호칭 또는 보호 지리적 표시에 따른 명칭을 메뉴 또는 다른 어떤 매체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한다.”

II. 앞의 I은 2020년 6월 1일에 시행한다.

제9조

「소비법전」 IV편 I장 II절 2관의 끝에 L. 제412-12조를 추가한다.

“L. 제412-12조 라벨의 일반적인 표시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 맥주의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없도록 맥주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를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한다.”

제10조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 L. 제661-8조 마지막 항 중 “무료” 다음에 “또는 유상”을 추가한다.

제11조

통제원산지호칭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제한 지역 중에서 “플레레트 드 디” 이외의 스파클링 와인의 생산을 금지하는 「1957년 12월 20일 법률 제57-1286호」는 폐지한다.

제12조

I. 조세일반 제407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포도재배 기록부, 의무적으로 신고 및 시장조사, 제품의 운송에 따른 서류 및 포도·와인산업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록부를 위한 정보작성에 관한 이사회규칙(CE) 479/2008의 적용방법에 대한 적용 방법에 관한 2009년 5월 26일의 위원회규칙(CE) 436/2009 8조, 9조 및 11조의 각조에 따라”를 “농산물 시장의 공통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이사회규칙 (CEE) 922/72, (CEE) 234/79, (CE) 1037/2001 및 (CE) 1234/2007을 폐지하는 2013년 12월 17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UE) 1308/2013의 적용을 위해 마련된 유럽의 법규에 따라”로 한다.

2 ° “인” 다음에 “의무이며, 동시에”를 추가한다.

3 ° “이 조에서 규정된 요건”을 “유럽의 법규에 규정된 요건 및”으로 한다.

II. 「농업 및 해양어업법전」 IV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L. 제644-5-1조제1항의 끝에 있는 “규칙(CE) 436/2009의 의미에서”를 삭제한다.
2. VI장 V절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a) L. 제665-4조제1항 중 “2009년 5월 26일 위원회규칙(CE) 436/2009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그 세목 및 기재사항이 이 규칙 부칙 I 에 기록된”을 삭제한다.
 - b) L. 제665-5조 III 제1항 중 “2009년 5월 26일 위원회규칙(CE) 436/2009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그 세목 및 기재사항이 이 규칙 부칙 I 에 기록된”을 삭제한다.

이 법은 국가의 법률로 시행한다.

파리, 2020년 6월 10일

참고문헌

- 남궁술, “프랑스 소비자법 체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5권 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 법령용어정비사업팀, 2006 프랑스 법령용어 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38150&AST_SEQ=1286&ETC=0
- 심을식,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AOC) 고찰”, 용봉인문논총, 통권 53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 프랑스 국가법률정보 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download/pdf?id=sAjwX39twFQN2kUpNDKheFsDFihSq-tW46Kwa2ISZzs=>
- 프랑스 三輪和宏, フランスの農産物及び食品の情報の透明性に関する法律, 外国の立法 No. 286(2020. 12),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585853_up_02860001.pdf?contentNo=1&alternativeNo=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4월 30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